

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(대안)

의안번호	3271
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06월 15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이종환 의원이 2021년 8월 8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(의안번호: 2546)과 이병도 의원이 2022년 5월 25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」(의안번호: 3248)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6. 15)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」과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」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,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정의 각 호에 열거하여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규정을 통합해 대안을 제안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.
-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·시행함(안 제5조).
-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1조).
-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.

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콘텐츠산업”이란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
나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
다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
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
마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)과 관련된 산업

바.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

사. 그 밖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

2. “콘텐츠”란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의

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3. "디지털콘텐츠"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.
4. "디지털문화콘텐츠"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.
5. "멀티미디어콘텐츠"란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 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.
6. "에듀테인먼트"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·제작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

2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
3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
4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·제도 등의 개선
5.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,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
2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·단체 및 기업,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지원
3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·제작·마케팅, 기술개발 등 지원
4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
5.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,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
6.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·관·연 협력체계 구축
7.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
8.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·단체 등에

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) ① 시장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평가
3. 제6조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

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
2.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3.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
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